

영 등 포 구 의 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2004.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 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 1976. 1. 5 준공된 우리구 본청의 청사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 건축설비의 기능저하가 심하고, 행정기능 및 서비스의 변화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청사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 청사건립에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청사건립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함(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에 의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구청사건립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및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임(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제 12조)

□ 경 토 의 견

○ 신청사건립 타당성

우리구 청사의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본관은 1976. 1. 5 건립된 노후한 건물이고 업무공간의 부족으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 업무공간 분산으로 인한 민원처리 불편, 주차공간의 부족 및 민원인의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립기금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청사현황

위 치	대 지	건 평	규 모	준공일	비 고
당산동3가 385-1 (본관)	7,622㎡ (2,307평)	9,718㎡ (2,748평)	지하1,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평육개)	1976. 1. 5	주차타워 (40대)
			지하1,2층통로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1983.11.30	대피호
보건소		5,026㎡ (1,520평)	지하1,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1994. 9. 1	
부속건물		385㎡ (116평)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1997. 3.26	우리은행 취업정보은행
당산동3가 370-4 (교통지도과)	2,940㎡ (890평)	586㎡ (177평)	지상1층 (경량철골조)	1998. 4. 1	
당산동3가 370-5 (교통행정과)		473㎡ (143평)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임차기간 ('03.4.1- '05.3.31)	임차보증금 652,080천원

○ 관련법규 검토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금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후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드시 영등포구청사 건립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금의 조성 검토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출연금, 보조금, 교부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출연금은 매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우리 구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자원조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조성시기에 대하여 청사부지의 확정 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청사부지의 확정에는 구민의 의견수렴·행정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원 기준액은 각 자치구별로 매년 기준재정 수요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로 산정하고 있는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는 약 90% 정도되므로 건립 총공사비의 40%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의 지원사례를 보면 동대문구는 총 공사비 538억원의 73%인 397억원, 도봉구는 총공사비 570억원의 66%인 38억원, 성동구는 총공사비 827억원의 68%인 565억원, 금천구는 총공사비 995억원의 80%인 802억원 이었으며, 2005년 설계 발주 예정인 관악구는 총공사비 800억원의 50%인 4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검토

조례안 제12조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항이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 제15쪽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작성시기와 결산서의 작성시기가 다르므로 조례안 제12조 제2항을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좀더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12. 9.

보고자 : 김찬재